

 신안산대학교	<b>직원 위원회 규정</b>	규정 번호	4-1-18
		제정 일자	2005.09.01
		개정 일자	2016.06.01
		책임부서/팀·계	사무처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 직원(계·과장) 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 위원회는 직원의 권익신장 및 복리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직원과 관련된 제 규정의 제·개정 시 의견 개진에 관한 사항
2. 근로조건 유지·개선, 업무능력 향상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
3. 직원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기여에 관한 사항
4. 직원 상호간 친목 및 유대증진에 관한 사항
5. 행정발전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직원으로서의 전문성 및 자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
6. 기타 대학발전과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결정에 참여 등에 관한 사항

**제3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사무처장, **교무과장**, 시설과장, **교무계장**, 학생계장, **교학계장**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1.02.22., 2011.12.19., 2016.06.01.>

② 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**교무과장**으로 한다. <개정 2011.12.19.>

**제4조(임기)**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**제5조(위원장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6조(회의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7조(서기)** 위원회는 위원 중 1인을 서기로 둔다.

#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05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1년 0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6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.